

□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규정 개정연혁

시행일자	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	비고
'68.01.15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극장, 영화관, 집회장의 무대부 연면적 500m² 이상(지하층·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으로 바닥면적 300m² 이상) ◦ 카바레, 오락장, 바 등 지하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이 연면적 1,000m² 이상 ◦ 박회점, 시장, 숙박소 등이 지하층·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이 연면적 1,500m² 이상 	최초 제정
'80.04.15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지하가로서 바닥면적 1,000m² 이상인 건축물 	
'81.11.06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여관, 호텔, 여인숙 용도 건축물의 11층 이상 부분 	
'84.06.30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11층 이상에 여관, 호텔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이 있는 건축물의 경우 전 층 	
'95.08.10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11층 이상에 여관, 호텔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이 있는 건축물의 경우 전 층 ◦ 복합건축물 연면적 5,000m² 이상 	
'04.05.30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11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전 층(아파트의 경우 '05.1.1. 시행) ◦ 노유자시설, 정신보건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 연면적 600m² 이상은 전층 ◦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0m를 넘는 랙크식 창고로 연면적 1,500m² 이상 ◦ 지하층·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 1,000m² 이상인 층 ◦ 복합건축물 또는 교육연구시설(기숙사) 연면적 5,000m² 이상이면 전층 	4분법
'05.11.11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11층 이상의 경우 전층 	
'15.07.01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(정신병원 제외) 	
'18.01.28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6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전층 	의정부 아파트 화재
'19.08.06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병원급 의료기관(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, 요양병원) 연면적 600m² 이상 	밀양 세종병원
'22.02.25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조산원, 산후조리원 연면적 600m² 이상 	
'22.12.01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m² 이상인 모든 층 * 간이스프링클러(300~600m² 미만) 	제천화재 분법